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선화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37
----------	------

발의연월일: 2021. 9.

발 의 자: 황선화 의원, 남연희 의원
민운기 의원, 임종숙 의원
김중곤 의원, 양옥희 의원
은복실 의원

찬 성 자: 박영희 의원, 오천수 의원
이민옥 의원, 신동욱 의원
김현주 의원

1. 제안이유

발급 대상자 관련 내용의 일부 개정을 통해 체험학습카드 발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게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급대상자 중 외국인의 범주 확대 (안 제3조)

나. 발급대상자의 범주 확대 (안 제3조 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다. 입법예고(2021. 9. 30. ~ 2021. 10. 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예산조치, 합의, 기타사항 등은 제정 조례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선화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발급대상자) 본문 중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을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을 '제60조에 따른 각종 학교나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u>「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u></p> <p>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초·중등교육법」 <u>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u></p>	<p>제3조(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u>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u></p> <p>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초·중등교육법」 <u>제60조에 따른 각종 학교나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u></p>

〈 관 계 법 규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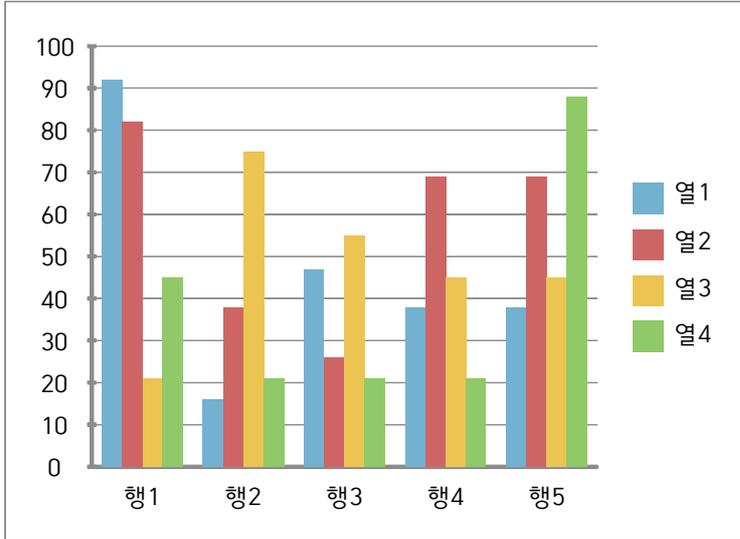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
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4. 1. 28.>

-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